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66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수진・박홍배・김정호

김성환 · 송옥주 · 장철민

민병덕 • 이건태 • 서영교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신종 감염병 확산 등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기존의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된 경우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시설과 장비 등의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피해 상황에 기초하여 당해 소상 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피해, 감염병 대응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정부의 기후위기 및 감염병 대응체계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진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의 사업자보다 낮은 비율로 자산을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자산상실비율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이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6(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소상공인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소상공인이 1년 이내에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차량 및 기계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20 이상"을 "100분의 20 이상(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및 재해손실세액공 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6(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소상공인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반은 소상공인이 1년이내에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차량 및 기계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	<u>다.</u>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 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 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지방소득세액(사업소 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 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 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② ~ ⑧ (생 략)

<u>100</u>
분의 20 이상(사업자가 소상공
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
<u>상)</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